

圖書館大會 主題發表

우리 나라 圖書館政策의 現況

尹 泳 大
大司書課長

1. 머리말

우리 나라에서 國家的次元에서의 圖書館政策이라 하면 첫째 1963年 10月 28日에 制定, 公布된 圖書館法(法律第1424號)과 1965年 3月 26日公布된 施行令인 大統領令第2086號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圖書館問題를 法律로 다룬 事實이 있다. 그러나 그 圖書館法은 法第7條의 國家等에 對한 公共圖書館 設置의 勸獎(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的向上을 爲하여 豫算範圍안에서 公共圖書館設置 育成에 努力하여야 한다) 條項에서 엿볼 수 있듯이 政府에서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義務를 갖는 것이 아니고, 豫算範圍內에서 할 수도 있고豫算이 없으면 아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微溫의이고 積極性이 缺如된 形式에 不過한 印象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15年이 經過하면서 社會的, 文化的인 많은 變遷을 가져왔고 特히 高度의 經濟的인 成長을 갖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의 改定도 보지 못한채 지금까지 未洽한 狀態로 남아있다. 圖書館은 原來 그 社會의 變化에 따라 政策도 바뀌어야 한다고 볼때 너무나도 國家에서 圖書館에 對하여 無關心하지 않았나 生覺된다.

둘째로 1968年에 公共圖書館擴充 5個年計劃이 政府에서 採擇된 적이 있었으나 計劃年度도 미치기以前에 中斷되고 말았다. “未洽하기 짜이 없는 圖書館法의 立法과 中斷되어 버린 公共圖書館의 擴充計劃”의 두가지를 除하고 나면 國家로서의 圖書館政策은 空白狀態였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나 奇蹟의인 經濟成長을 이룩한 우리 國家에서 關心을 갖어준다면 圖書館發展은 얼마든지 可能한 時點에 왔다고 본다. 多幸히 政府에서도 圖書館에 對한 關心을 갖기始作한 조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機會에 散在하여 있는, 그리고 圖書館人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問題點들을 総合하여 보기로 한다.

다음에 館種別 그리고 몇 가지 小主題로 나누어 問題點을 列舉하고 本人個人의 意見을 附加하여 論하고자 한다. 館種別의 區分에 있어서 圖書館法 第3條에는 設立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

으로 區分하고 있으나 學校圖書館에서 大學圖書館을, 特殊圖書館에서 專門圖書館을 分離하여 論하기로 한다.

學校圖書館과 大學圖書館은 學校라는 教育機關에 設置되어 있는 共通點은 있으나 大學의 使命은 初·中·高等學校에 比하여 教育機能에 더하여 研究機能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沈奧한 學問研究를 艱 바침하는 곳이 大學圖書館이기에 그 重要性과 機能의 特異性을 勘案하여 圖書館法에서도 앞으로 分離하여 改定함이 바람직하다고 生覺되어 特殊圖書館은 特殊한 條件과 環境에 處한 사람을 對象으로 하는 圖書館을 뜻하는 것으로 即, 各種 收容施設에 收容된 人員을 對象으로 하는 矯導圖書館, 婦女保護所圖書館等과 特殊條件에 處한 點字圖書館, 身體障礙者를 爲한 圖書館等을範圍로 하고 特定主題의 學術專門主題에 對한 圖書館을 專門圖書館으로 區分함이 바람직하다고 生覺되어 앞으로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圖書館, 專門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하여 論하기로 한다.

2. 圖書館을 爲한 國民機關

國家發展에 있어서 그리고 文化社會에서의 國民生活에 圖書館이 얼마나 重要한가는 여기에서 새삼 論할必要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圖書館政策이 거의 없다는데는 첫째 行政府에 圖書館을 專擔하는 行政部署가 없다는데 그 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美國의 境遇 白堊館에 大統領直屬으로 圖書館諮詢委員會가組織되어 있고 行政府에 獨立된 圖書館委員會가構成되어 있는데 比하여 우리나라의 文教部에서 主管은 하되 專擔部署가 없는 實情이다. 바람직한 것은 文教部에 圖書館局이 設置되어야 하겠으나 여의치 않다면 最少한 課單位는 반드시 設置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되겠지만 國立專門圖書館들이 많이 設立될 境遇各部處間의 協力과 調整等을 맡고 또한 國家의次元에서의 圖書館政策樹立에 諮問할 수 있는 圖書館諮詢委員會가 大統領이나 國務總理直屬으로 設置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圖書館界一角에서는 圖書館의 專擔部署를 文化公報部를 移轉함이 옳다는 主張이 일어나고 있다.

그理由는 첫째 圖書館을 教育的機能보다는 文化的機能이라는 主張이며 둘째는 文教部가 너무 業務量이 많아 지금껏 圖書館이 無視되어 왔다는 主張이다. 그러나 本人은 反對意見이다. 첫째 圖書館이 文化機關이나 教育機關이냐 하는 意見에 對하여 大學 및 學校圖書館의 教育機能은 누가 무어라하여도 反對될 수 없으며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도 平生教育을 爲한 社會教育機關으로서의 教育機能도 反論을 提起할 사항은 없을 것이다. 文化란 概念은 廣意로는 人間이 必要로 하여 開發한 決果를 모두 文化라고 한다면 政治·經濟·社會·敎育·產業等 모두가 文化인 것이다. 그리고 狹意로는 文化란 文藝를 通念의으로 指稱한다. 따라서 圖書館은 廣意로는 文化機關이요 狹意로는 教育機關이라고 生覺하여야 할 것이다.

現在 文化公報部는 狹意의 文化 即 文藝를 主管한다고 볼 때 圖書館의 業務가 屬할 곳은 文教部란 生覺은 뚜렷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그 生覺은 公共圖書館만을 生覺하고 하는 主張이겠으나 公共圖書館보다 宜의으로 複선 많은 學校圖書館과 大學圖書館은 教育機關의 教育手段으로서 떼어놓을 수 없는 機構를 文化公報部에서 主管한다면 問題는 더욱 困難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本人은 專擔部署의 移轉이 問題가 아니고 專擔機構設置의 與否가 注目거리라 生覺된다.

3. 司書의 養成制度

우리나라는 現在 專門學校에서 準司書課程으로 全國에 5個校와 成均館大學 附設 司書敎育院이 있으며 學部課程에는 現在 6個大學에 圖書館學科가 設置되어 있으며 1979年부터 清州大學과 釜山女子大學에 각각 新設認可되어 8個大學에 設置되게 되었다. 그러나 忠南과 江原, 京畿, 全南, 全北, 濟州道 地域에 1個 學科도 없는 實情으로 이地域에서 司書를 採用하기가 매우 힘든 처지에 있다.

圖書館의 重要性을 認識한다면 來年度 大學入學定員을大幅增員하는 이 機會에 道別로 1個學科씩 고루認め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以外에 國立中央圖書館에서 單期敎育으로 準司書資格證을 附與하는 課程이 있다. 여기에서 生覺하여 볼 點은 準司書資格證을 附與하기 爲한 課程이 專門學校 課程에서 每年 310名이 豐出되고 있는 實情인데 그럼에도 成均館大學 附設 司書敎育院의 短期敎育課程과 國立中央圖書館의 短期敎育課程이 如前히 必要한 것인가?

專門學校에서는 2年을 敎育하여 準司書資格證을 附與하는데 1年 또는 2個月을 敎育하여 같은 資格證을 주어 司書의 質을 떨어뜨리는 것은 生覺해 볼 問題이다.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國立圖書館에 有資格司書들

이 就業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無資格者들을 敎育하여 쓸 수 밖에 없다고 主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언제까지 無資格者를 採用하여 短期敎育을 시키는 惡循環을 거듭할 수는 없다. 司書公務員의 昇級 上限線을 높이고 紙與에 있어 手當을大幅引上 하는 等 制度의 으로 補完하여 解決할 수 있는 方案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大學이나 專門圖書館에 專司書(Subject Specialist)를 義務的으로 配置하도록 하여 教授職이나 또는 研究職으로 優待할 수 있는 길을 摸索하려면 于先 專門司書의 養成問題가 急先務이다. 大學院課程으로 圖書館學科를 두어 學部에서 하나의 主題專攻을 갖인 사람을 入學시켜 主題專門家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圖書館學科에 大學院課程이 없는 것은 아니나 T/O 問題와 登錄金 또는 入學節次나 授業時間等 많이 應試할 수 있는 制度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學校마다 人文·社會·科學等의 主題의 特色을 각각 갖는 大學院을 設置하여 自己의 專攻에 맞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資格證의 發給에 있어서도 文教部長官이 發給하던 것을 國立中央圖書館長의 名儀로 發給하여 資格證의 品格을 格下시키는 問題는 考慮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國民學校에 까지 司書教師를 法으로 配置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該當 양성 機關이 없다. 그러므로 國民學校圖書館을 爲하여 教育大學에 中高等學校圖書館을 爲하여 師範大學에 각각 圖書館學科를 두어 司書教師를 養成함이 어떠할까 生覺된다.

4. 公共圖書館

圖書館의 擴充

1) 公共圖書館에서 第一 時急한 것은 圖書館數의 絶對不足인 것이다. 年次的 計劃에 依하여 全國 市·區·郡·邑·面單位까지 最小個館以上의 公共圖書館을 設立하여야 한다. 方法으로는 政府豫算의 投入과 一般個人 및 團體에 圖書館을 爲한 投資에 있어 稅制上의 特惠等으로 積極誘導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다. 全國에 一般市 34市, 서울과 釜山에 34區, 郡이 138, 邑이 120, 面이 1,344, 計 1,670이 되나 現在 公共圖書館數는 107個에 不過하며 市·邑·郡單位까지만 하여도 206個가 된다. 그러나 現在 107個의 圖書館中에도 開館도 하지 못한 公共圖書館이 包含되어 있으며 事實上 제구실을 할 수 있는 圖書館은 몇개가 되지 않으므로 “公共圖書館擴充計劃”을 다시 樹立한다면 新設뿐이 아니라 既存圖書館의 補完費와 建物費 以外에도 運營費를 豫算에 計上하여 1968年度計劃失敗의 前轍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公共圖書館의 所屬廳 一元化

現在 公共圖書館들이 未治한 處地에 더우기 所屬廳이 教育廳(文敎部), 市·郡(內務部)으로 二元化되어 圖書館間의 協力等이 이루어지지 않고 一貫性 있는 圖書館運營이 되지 않고 있다. 文敎部에 統一하여 所屬시킴이 바람직하다.

3) 公報院과 圖書館의 統合

現在 文化公報部의 管掌下에 全國 63個處의 公報院이 設置運營되고 있다. 그 機能을 살펴보면¹⁾ 가) 地域社會國民의 文化的 成長에 寄與함. 나) 鄉土의 固有文化遺產을 保存하고 傳統文化를 繼承하여 新로운 文化를 創造하는데 寄與함. 다) 國家關係資料 落集 및 弘報. 라) 映寫會, 謝演會, 展示會, 雄辯大會, 各種文化行事의 主催. 마) 圖書館奉仕機能等이다. 이것은 完全히 圖書館의 奉仕機能으로 公報院의 機能이 公共圖書館의 機能內에 完全히 包含되는 것이다. 兩機關이 兩立하여 하나도 제대로 完璧한 機能을發揮할 수 없을 바에는 統合하여 地方文化發展에 寄與할 수 있도록 公共圖書館으로 統合 改編함이 바람직하다.

4) 司書職 國家公務員 處遇問題

現實情이 司書들이 國立 및 公立圖書館의 勤務를 忌避하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司書職 公務員의 升級上限線을 一級까지 높여야 하며 圖書館長도 司書로 任命될 수 있어야 하며 T/O에 있어서도 現在 地方公務員法에 司書職이 設定되어 있으나 아직 定員配定이 안되고 있는 實情이다. 하루속히 實現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司書職이 現在 行政職群에 屬하나 이를 學事職群으로 變更하므로서 研究職으로 待遇하여 矜持를 갖고 계속 研究하는 氣風을 마련하여 주고 士氣를 振作시켜야 할 것이다.

5) 豫算

國家에서 積極的인 豫算을 바침이 있어야 하겠으며 그 地方自治團體의 歲入의 %로 豫算額을 法律로 定할 것이며 中央情府와 地方自治團體의 豫算負擔額의 比率도 定하여야 될 것이다.

6) 館長도 司書職으로 補할것이며 最高決裁權者에 直屬되도록 組織되어야 한다. 即 公共圖書館은 教育長直轄로서 館長은 教育長에게 直接 責任을 갖는 位置가 되어야 할 것이다.

7) 司書의 數는 談當地域社會의 奉仕對象者數로 比例하여 配置되어야 한다.

8) 入館料 徵收의 禁止

現在 豫算의 不足으로 偏法으로 入館料를 徵收하고 있으나 公共圖書館은 元來 國民을 爲한 文化, 教育施

設로 누구나 公平히 不便敎이 利用되도록 하여야 한다. 私立일 境遇에는 國家豫算의 補助로라도 入館料의 徵收는 終息되어야 한다. 住民들이 公共圖書館利用을 外面하는 데에 하나의 原因이라고 分析되고 있다.

9) 積極的奉仕體制의 確立

公共圖書館의 奉仕面에서 가장 時急한 것은 館外貸出이다. 貧弱한 藏書에 여러 가지 與件이 어렵겠지만 住民들을 于先 圖書館에 誘致하는 데에는 가장 重要한 條件이 될 것이다. 그리고 公共圖書館의 業務인 各種文化行事의 誘致 및 主催를 할 수 있도록 豫算措置가 되어야 하겠으며 積極的인 弘報活動으로 圖書館利用을 生活化하도록 하여야겠다.勿論 이는 公共圖書館에 豫算과 人員의 充分한 條件이 갖추어져야만이 可能할 것이다.

10) 公共圖書館의 協力體制의 確立

資料의 貧困으로 제대로 奉仕할 수 없는 形便임에도 公共圖書館의 所屬廳도 二元化되어 있는데다가 公共圖書館間의 相互連繫가 없어 相互協力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所屬廳을 一元化하고 道單位에 地域中央圖書館을 두어 強力한 協力體制를 이루어 相互貸借, 協同收書와 書誌活動을 實施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함께 좋을 것이다.

11) 마을文庫

現在 內務部에 所屬되어 있는 마을文庫를 文敎部에서 吸收하여 公共圖書館의 下部組織으로 하고 自動車文庫等 活潑히 發展시켜 全國 구석구석까지 모든 國民이 冊과 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大學圖書館

1) 專門司書(大學院 碩士學位 以上 所持者)를 두고 이들은 美國에서와 같이 教授職으로 待優하도록 하여 大學教育에 一翼을 擔當하도록 하여 沈與한 學術研究의 豫算을 할 수 있도록 有能한 司書의 誘致에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2) 館長은 專門司書가 任命되도록 法制化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根據에서 大學의 圖書館長은 教授가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非專門職인 教授가 館長이 되므로하여 常識으로 圖書館을 運營하므로서 實務者인 司書와의 軌蹻이 助長되어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沮害하는 要素가 되고 있다. 圖書館學도 大學院에 博士課程까지 設置하고 있는 學問으로서 專門職을 非專門職이 統率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모로나 矛盾이다. 그리고 圖書館長은 모든 學事委員會나 教科課程審議委員의 일원이 되어 謝義計劃을 積極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豫算은 全校豫算의 %로 定하고 藏書는 量만 規

1) 도서관 Vol.26 No.12. pp.4~10 國가문화정책상에 있어서 도서관의 기능 및 기구 일원화 문제. 이용남.

定할 것이 아니고 質을 規定하여야 하며 人文係와 理工係를 莫論하여 區分없이 藏書類를 規定함은 不當할 것이다.

4) 基準은 大學設置基準令에서 分離하여 圖書館法에 強力히 法制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國立大學圖書館들의 職制를 國立서울大學校와 同一하게 統一하고 人格形成과 高度의 學術, 教授, 研究를 뒷바침하는 大學圖書館의 司書는 반드시 大學以上의 學力所持者를 採用할 것이 要望된다. 公務員 採用規定向에 依하여 採用되므로 해서 大學教育을 經驗조차도 못한 사람이 大學圖書館에 勤務함은 矛盾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學校圖書館

1)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法 第25條2項에서 따로 閣令으로 定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履行되지 않고 있다.

2) 司書教師의 地位 및 昇級

司書教師를 特殊教師에서 一般教師系列에 두고 主任教師制度에 適用시켜야 하며 校監, 校長等 管理職으로 昇級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3) 自律學習時間과 讀書指導를 完全히 司書教師의 管掌下에 實踐할 것이 要望된다.

4) 施行令 第6條(司書의 配置)에서 初, 中, 高等學校圖書館에는 司書教師와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둔다고 하였으나 이는 司書가 아니드라도 그 職務를 맡을 수 있다는 뜻이 되므로 犯束性이 없다. 이를 반드시 “司書教師를 配置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1968年에 文敎部에서 一部 高等學校에 33名의 司書教師를 配置한 後로 中斷되고 말았다.

5) 豈算의 確立

學生登錄金에 圖書館費를 別項으로 徵收하는 方法.

7. 專門圖書館

1) 國家에서 主題別 專門圖書館을 立하여야 한다. 例를 들어 國立醫學圖書館, 國立農學圖書館等을 設立하여 國內에서 그 主題에 對한 相互協力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書誌活動, 協同收書, 相互貸借 등을 活潑히 進行시켜야 할 것이다.

2) 研究機關 및 研究開發을 要하는 產業體에는 반드시 그 主題를 中心으로 하는 圖書館을 設置하도록 法制화할 것이 要望된다. 圖書館法에서는 特殊 및 專門圖書館에 關하여는 除外되어 있다.

3) 國會圖書館과 國立中央圖書館의 合併問題가 간혹 論議되지만 既存 圖書館을 統閉合하여 數를 줄일 必要是 없으며 다만 國家를 代表하는 業務 (納本制度等)는 國立中央圖書館으로 移管하고 國會의 立法活動을 뒷바침하는 專門圖書館으로 育成發展시키고 國立中央圖書館은 名實俱허 國家를 代表하는 圖書館으로大幅擴張하여 發展시켜 나아가야 되겠다.

8. 特殊圖書館

우리나라도 이제 크게 經濟成長이 이루어져 政府에서는 社會福祉에 關心을 가지게 되었다. 此際에 特殊事情에 處한 같은 國民들도 같이 惠澤 받을 수 있도록 點字圖書館이라든가 肢體障礙者를 爲한 特殊施設을 갖춘 圖書館을 많이 設置하고 矯導所等에도 在所者の 技術習得과 併行하여 知識과 教養을 濡養할 수 있도록 圖書館을 設置育成하여야 할 것이다.

9. 結論

以上에서 列舉한 問題點에서 漏落된것도 많을 것으로 生覺된다. 全體討議時間에 補充하여 國家의 圖書館政策立案에 하나의 參考資料가 될 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기 바란다.

● 未納會費와 出版物 代金을 조속히 納付하여 주십시오.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시는 會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會員 여러분께서 納付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은 協會의 運營은勿論 圖書館 事業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基本資金입니다.

여러 圖書館이 財政的으로 어려운 事情이 있을 것으로 아오나, 協會의 貧弱한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와 그간 未納하신 會費와 出版代金을 納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付託드립니다.